

양자생명물리과학원 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나노바이오기술 및 정밀의료 응용연구 분야를 집중육성하고 국제 공동연구와 산학협력을 추진할 플랫폼으로서 양자생명물리과학원(이하 “과학원”이라 한다)의 조직,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) 과학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기초 양자생명물리과학을 연구를 통해 첨단나노바이오기술 및 정밀의료 응용연구 분야 연구
2. 나노바이오의료분야의 산학협력을 통한 바이오칩 등 사업화
3. 양자생명물리과학분야 국제협력연구 추진
4. 양자생명물리분야 차세대 전문인재 양성
5. 기타 과학원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제2장 조 직

제3조(기구) 과학원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.

1. 원장
2. 부원장
3. 운영위원회
4. 산하 연구센터
5. 행정실

제4조(원장) ①원장은 과학원을 대표하며, 과학원의 제반 사업을 통할한다.

②원장은 교수·부교수·참여 또는 부참여 가운데에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③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
④과학원에는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, 부원장의 임용절차·임기 등은 원장의 임용절차·임기 등을 준용한다.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5조(설치 및 구성) ①과학원의 운영전반에 걸친 기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운영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.

③부원장, 행정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④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내외 전문가 가운데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6조(기능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과학원의 발전계획 및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
2. 과학원의 제반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3. 연구 및 연구관련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
4. 소속 연구인력 임용, 평가기준 수립 등에 관한 사항
5. 연구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6. 연구 장비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
7. 소속학과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
8. 예·결산의 심의 및 배정에 관한 사항
9.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제7조(회의)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4장 행정실

제8조(설치) 과학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.

제9조(업무) 행정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.

1. 과학원의 일반 행정
2. 과학원의 연구 행정
3. 과학원 소속학과 학사업무 지원
4. 과학원의 교내·외 홍보업무
5. 과학원의 홈페이지 관리
6. 기타 필요한 행정지원

제5장 교원·연구원

제10조(교원) ①과학원에는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교원을 둘 수 있다.

②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「교원인사규정」을 따르며,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은 「비전임교원임용규정」에 따른다.

제11조(연구원) ①과학원 및 과학원 산하 연구센터에 두는 연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상임연구원 : 연구목적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.
 - 가. 수석연구원 :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부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
 - 나. 책임연구원 :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
 - 다. 선임연구원 :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
 - 라. 연구원 : 석사학위이상 소지자

2. 객원연구원 :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.

3. 연구원보 :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. 단, 연구장비 운영·관리 인력은 전 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다.

②제1항제1호와 제3호의 상임연구원과 연구원보는 과학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
③제1항제2호의 객원연구원은 과학원장이 위촉한다.

④상임연구원,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(위촉)기간은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⑤기타 세부사항은 「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규정」에 따른다.

제6장 교 육

제12조(과정) 과학원에 다음 각 호의 과정을 둘 수 있다.

1. 학사과정
2. 대학원과정

제13조(교육과정) 과학원은 제12조의 과정을 위해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, 이에 관한 사항은 본교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제14조(공개강좌) 과학원은 본교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.

제7장 보 칙

제15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과학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